

기초학습능력 향상 교육에 관한 지침

제정 2016.03.01.
 개정 2016.10.31
 개정 2018.02.28.
 개정 2024.04.15.

1. 근거

학생학습역량강화지원 규정 제5조 ⑤항

2. 정의

기초학습능력 향상 교육이란 문화산업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언어능력과 수리능력 등의 기초학습과 가치관 함양 및 인문기초소양을 높이기 위한 문학, 역사, 철학 등의 학습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 지원프로그램(비교과)을 의미한다.

3. 기초학습능력진단

가. 진단업무부서는 입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을 진단하고 기초학습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나. “기초학습능력진단”의 과목으로는 국어, 외국어, 수학, 창의 중 스쿨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2개 이상 과목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진단도구(문항)는 자체 개발하거나 외부에 의뢰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개발한 문항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라. 진단도구(문항)의 난이도와 문항 수, 시험 시간은 매해 입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조절할 수 있으며 스쿨별 문항을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마. “기초학습능력진단”결과는 학생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학생 개인에게 제공한다.

바. “기초학습능력진단”결과의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스쿨에서는 전공분야 교육과정 이수 적합성을 검토하고 향후 NCS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지도 참고자료와 과목별, 분야별 집중 교육대상 선발을 위한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리케이온에서는 교양 교육과정 반영과 비교과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할 수 있으며 도서관과 기타 부서에는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비교과프로그램 개선 및 정규교과목 운영시 활용할 수 있다.

4. 기초학습능력진단 인증

가. “기초학습능력진단”결과 과목별 60점 이상을 인증으로 처리하며, 인증을 취득한 학생들에게는 관련 정규 과목 및 기초학습능력향상프로그램을 추천한다.

나. “기초학습능력진단”결과 과목별 미인증자와 미응시자는 인증 취득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관련 정규과목 및 기초학습능력향상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다. “기초학습능력진단”결과 과목별 인증기준은 학년도별 수준상태를 점검하여 진단업무부서장이 정할 수 있다.

5. 기초학습능력진단 결과 피드백

3-3-26

가. 과목별 미인증자는 관련 프로그램 이수에 따라 후속인증 처리한다.

나. 삭제

다. “기초학습능력진단” 인증 취득 여부는 학생의 졸업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학생통합관리시스템에 기록되어 향후 학생지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미인증 학생 대상 조치사항은 총장이 결정한다.

라. 인증과 미인증 학생들에게 추천할 정규 교과 및 프로그램은 각 스쿨에 공지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6. 부칙

본 지침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지침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본 지침은 2018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지침은 2024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